



의안번호	제 2018 - 1호
보 고 연 월 일	2018. 1. 15. (제84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14차 전체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10명)	1
3. 주요 안건	1
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1
1. 검토의 배경	1
2.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1
가. 제1유형(일반상해)[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1
나. 제2유형(중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2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라.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4
마. 형량범위(안)	5
3. 대유형2[특수상해 · 누범상해]	6
가. 제1유형(특수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6
나. 제2유형(특수중상해 · 누범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6
다. 제3유형(누범특수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7
라. 형량범위(안)[의견일치]	7
III.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7
1. 검토의 배경	8
2. 제1유형(일반폭행)[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8
3.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8
4. 제5유형(운전자 폭행치사)	9
5. 형량범위(안)	10

IV.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11
1. 검토의 배경	11
2. 제1유형(일반협박)	11
3. 제3유형(운전자 협박치사)	12
4. 형량범위(안)	13
V.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14
1.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4
2.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5
3.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17
4.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18
VI. 향후 일정	19

【별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경,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2-1”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2-1”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2-1” ■ 구민경, “양형인자 추가 검토” ■ 이용, 김도연,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추가 검토” ■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요약본 |
|--|



I. 제11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8. 1. 5.(금) 15:30 ~ 20:00
- 장소 : 제주도 디아넥스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구민경, 김혜경, 김도연, 박수정, 이용, 범현, 전휴재, 한상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및 양형인자 검토

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1. 검토의 배경

- 2017. 12. 4. 제83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중 가중영역 상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2.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가. 제1유형(일반상해)[**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10월	4월-1년6월	6월-2년 2년6월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상습상해죄의 형량이 일반상해의 권고 형량범위를 이탈하는 사건은 없음

- 다만, 양형기준 수정으로 상습상해가 유형분류에서 일반상해 유형의 양형인자로 반영된 부분을 감안하여 2년 → 2년6월로 상향함

나. 제2유형(중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음(91.1%), 다만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가중 영역의 형량분포를 보면, 29건 중 7건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이탈함
 - 48월(3건: 3건은 경합범 또는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54월(1건), 60월(2건: 2건은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96월(1건) ⇨ 가중영역 29건 중 7건 상한 이탈
 - 중상해는 행위결과가 중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 다만, 특별조정하여 권고형량 상한의 1/2을 가중할 수 있고, 권고형량 범위가 넓어질 경우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에 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비율	
		6	8	10	12	14	18	24	30	36	42	48	54	60	96				120
감경	수	12	11	15	28	2	13	6	0	1	0	1	0	0	0	0	90	13.96	51.7
	비율	13.3	12.2	16.7	31.1	2.2	14.4	6.7	0.0	1.1	0.0	1.1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0	1	17	0	20	12	1	3	1	0	0	0	0	0	55	18.95	31.6
	비율	0.0	0.0	1.8	30.9	0.0	36.4	21.8	1.8	5.5	1.8	0.0	0.0	0.0	0.0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2	4	3	8	0	6	1	4	1	0	29	40.97	16.7
	비율	0.0	0.0	0.0	0.0	0.0	6.9	13.8	10.3	27.6	0.0	20.7	3.4	13.8	3.4	0.0	100.0		
전체	수	12	11	16	45	2	35	22	4	12	1	7	1	4	1	1	174	20.03	100.0
	비율	6.9	6.3	9.2	25.9	1.1	20.1	12.6	2.3	6.9	0.6	4.0	0.6	2.3	0.6	0.6	100.0		

- 수정된 양형기준에 따라 추가된 죄명인 상습중상해, 상습중준속상해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현행 양형기준의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함
- 가중영역 상한을 3년 → 4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선고한 48월 사건을 포섭함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 다수의견(7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1%), 권고형량 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되며, 특별조정으로 10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함
-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5년~8년)을 참조할 필요 있음
-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가중영역의 형량분포를 보면, 104건 중 7건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이탈하여 그 비율(6.7%)이 높지 않음
 - 96월(1건: 1건은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108월(1건: 2건은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120월(3건: 9건은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144월(2건) ⇨ 가중영역 104건 중 7건 상한 이탈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10	12	18	24	30	32	36	42	48	54	58	60	72	84	96	108	120				144
감경	수	1	0	9	31	12	1	34	1	10	0	0	1	0	0	0	0	0	100	31.14	29.5	
	비율	1.0	0.0	9.0	31.0	12.0	1.0	34.0	1.0	10.0	0.0	0.0	1.0	0.0	0.0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1	5	4	0	34	9	46	5	0	25	1	3	0	0	1	0	135	46.62	39.8
	비율	0.0	0.7	0.7	3.7	3.0	0.0	25.2	6.7	34.1	3.7	0.0	18.5	0.7	2.2	0.0	0.0	0.7	0.0	100.0		
가중	수	0	0	0	0	0	0	3	0	19	3	1	22	13	25	2	3	11	2	104	74.23	30.7
	비율	0.0	0.0	0.0	0.0	0.0	0.0	2.9	0.0	18.3	2.9	1.0	21.2	12.5	24.0	1.9	2.9	10.6	1.9	100.0		
전체	수	1	1	10	36	16	1	71	10	75	8	1	48	14	28	2	3	12	2	339	50.53	100.0
	비율	0.3	0.3	2.9	10.6	4.7	0.3	20.9	2.9	22.1	2.4	0.3	14.2	4.1	8.3	0.6	0.9	3.5	0.6	100.0		

- 권고 형량범위가 넓어질 경우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에 반할 수 있음. 감경, 기본영역에 비하여 가중영역의 구간이 너무 넓어져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120월, 144월 사건은 살인과 유사한 형량이 필요한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예외적인 사건을 위해 형량을 높인다면 8년보다 더욱 높은 상한이 필요함

- 고의범과 과실범은 차이가 있으므로, 상해치사를 살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살인과 상해치사의 고의는 구분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임에도,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상해치사로 기소한 후 이를 살인과 유사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소수의견(3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8년

- 가중영역 상한을 초과하는 사건이 상당수 존재함
- 살인과 상해치사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의 경우, 살인과 유사한 권고 형량범위 제시가 필요함
- 살인과 결과적인 면에서 유사한 사건임에도 고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상해치사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과 유사한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될 수 있음

라.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1) 다수의견(6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6.5%), 가중영역 상한을 이탈한 사건 없음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6	8	10	12	18	24	30	36			
감경	수	12	10	9	20	3	0	0	0	54	9.93	61.4
	비율	22.2	18.5	16.7	37.0	5.6	0.0	0.0	0.0	100.0		
기본	수	0	1	1	11	7	3	1	1	25	16.56	28.4
	비율	0.0	4.0	4.0	44.0	28.0	12.0	4.0	4.0	100.0		
가중	수	0	0	1	0	3	3	0	2	9	23.11	10.2
	비율	0.0	0.0	11.1	0.0	33.3	33.3	0.0	22.2	100.0		
전체	수	12	11	11	31	13	6	1	3	88	13.16	100.0
	비율	13.6	12.5	12.5	35.2	14.8	6.8	1.1	3.4	100.0		

- 양형기준 수정으로 제2유형(중상해)에 중상해죄(1년~10년), 중준속

상해(2년 이상), 상습중상해(1년6월~15년), 상습중존속상해(3년 이상)가 포섭되어, 보복목적 상해보다 법정형이 높고, 중상해의 결과 반가치에 따라 실제 선고형량도 높으므로, 가중영역 상한에 차이를 둘 필요 있음

- 보복목적 상해 유형은 법률개정 등 특별히 변경된 사정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수정할 이유 없음

(2) 소수의견(4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 보복목적 상해의 법정형(1년 이상)이 중상해(1년~10년)보다 높으므로, 중상해의 권고 형량범위와 일치할 필요 있음
- 보복목적 중상해 사건의 경우, 실무상 법정형이 높은 보복목적 상해로 기소하는데 양형인자로 '중한 상해'가 적용되어 가중영역(1년6월~3년)에 해당하게 되는데, 중상해로 기소할 경우에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적용되어 가중영역(1년6월~4년)에 해당하게 되어 법정형과 달리 권고 형량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마. 형량범위(안)

(1) 다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1년6월	6월-2년2년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소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1년6월	6월-2년2년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대유형2[특수상해 · 누범상해]

가. 제1유형(특수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 가중영역 상한 3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2건으로 많지 않음
- 특별조정으로 4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중상해 가중영역 상한 4년과 비교하여 적절함

단위: 명, %, 월

구분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상해 범죄	특수상해	수	0	0	3	0	310	1	267	6	85	239	9	1	2	41	14	6	2	2	0	988	9.48
		비율	0.0	0.0	0.3	0.0	31.4	0.1	27.0	0.6	8.6	24.2	0.9	0.1	0.2	4.1	1.4	0.6	0.2	0.2	0.0	100	
	특수준속 상해	수	0	0	0	0	0	0	2	0	1	3	0	0	0	1	1	0	0	0	0	8	13.00
		비율	0.0	0.0	0.0	0.0	0.0	0.0	25.0	0.0	12.5	37.5	0.0	0.0	0.0	12.5	12.5	0.0	0.0	0.0	0.0	100	

나. 제2유형(특수중상해·누범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 가중영역 상한 5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1건 있음
- 중상해 가중영역 상한 4년과 비교하여 적절함
- 특수중상해1)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54	60	66	74	80			144	
특수중상해	수	0	0	0	1	0	0	0	2	2	2	1	0	2	0	1	0	0	0	1	12	97
	비율	0.0	0.0	0.0	8.3	0.0	0.0	0.0	16.6	16.6	16.6	8.3	0.0	16.6	0	8.3	0	0	0	8.3	100	

- 누범상해

단위: 명, %, 월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4	30	36	42			48
누범상해	수	0	0	0	0	0	0	0	0	0	3	1	0	0	0	2	1	0	0	0	7	18.2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8	14.2	0.0	0.0	0.0	28.5	14.2	0.0	0.0	0.0	100	

다. 제3유형(누범특수상해)[의견일치] ⇨ 현행(안)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 가중영역 상한 6년을 초과하는 사건이 없음
- 특별조정으로 9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상해치사 가중영역 상한 7년과 비교하여 적절함

단위: 명, %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폭처법(상습집단 흉기등상해)	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1	6.7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3	0.0	0.0	0.0	6.7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6	27	28	30	32	36	42	48	54	58	60	72	84	96	108	120	144	180		
폭처법(상습 집단-흉기등 상해)	수	0	0	0	3	0	4	1	1	0	0	1	2	0	0	0	0	0	15	39.20	
	비율	0.0	0.0	0.0	20.0	0.0	26.7	6.7	6.7	0.0	0.0	6.7	13.3	0.0	0.0	0.0	0.0	0.0	100.0		

라. 형량범위(안)[의견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III.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1. 검토의 배경

1) 2016. 1. 6. ~ 2017. 12. 31.까지 선고된 단일범

- 2017. 12. 4. 제83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중 제1유형(일반폭행),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유형(운전자 폭행치사)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2. 제1유형(일반폭행)[의견일치]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1년6월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상습폭행죄의 형량이 일반폭행의 권고 형량범위를 이탈하는 사건은 없음
- 다만, 양형기준 수정으로 상습폭행이 유형분류에서 일반폭행 유형의 양형인자로 반영된 부분을 감안하여 1년 → 1년6월로 상향함

3.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다수의견(8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가중영역의 형량분포를 보면, 13건 중 1건이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이탈함
- 84월(1건: 1건은 특별조정으로 양형기준 준수) ⇨ 가중영역 13건 중 1건 양형기준 상한 이탈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12	18	24	30	36	42	48	60	72	84			
감경	수	1	44	39	16	16	1	0	0	0	1	118	24.76	54.1
	비율	0.8	37.3	33.1	13.6	13.6	0.8	0.0	0.0	0.0	0.8	100.0		
기본	수	0	3	27	8	26	3	15	4	1	0	87	34.90	39.9
	비율	0.0	3.4	31.0	9.2	29.9	3.4	17.2	4.6	1.1	0.0	100.0		
가중	수	0	0	1	0	5	0	1	4	0	2	13	50.77	6.0
	비율	0.0	0.0	7.7	0.0	38.5	0.0	7.7	30.8	0.0	15.4	100.0		
전체	수	1	47	67	24	47	4	16	8	1	3	218	30.36	100.0
	비율	0.5	21.6	30.7	11.0	21.6	1.8	7.3	3.7	0.5	1.4	100.0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4%), 권고 형량범위 내에 대부분 포섭되

며, 특별조정으로 7년6월까지 선고가 가능함

나. 소수의견(2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6년

- 폭행치사 사건에서 현재 가중영역 상한을 초과하는 사건이 존재함
- 상해치사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을 8년으로 상향할 경우 그에 맞게 형량범위 상한을 올릴 필요 있음

4. 제5유형(운전자 폭행치사)

가. 다수의견(8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 법정형 변경 없고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으므로, 수정의 필요성 없음

나. 소수의견(2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8년

- 상해치사 가중영역 상한을 8년으로 상향할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운전자 폭행치사의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기준으로 유사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가중영역 상한이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음

- 살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형량범위(안)

가. 다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4년1년6월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누범·특수폭행	4월2월-1년2월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나. 소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4년1년6월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6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8년
6	누범·특수폭행	4월2월-1년2월	6월4월-1년10월	8월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IV.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형량범위 추가 검토 논의 결과

1. 검토의 배경

- 2017. 12. 4. 제83차 양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권고 형량범위 중 제1유형(일반협박), 제3유형(운전자 협박치사)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2. 제1유형(일반협박)

가. 다수의견(8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99.8%), 가중영역 상한을 이탈하는 사건 없음
- 30개월 선고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협박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한 사건임

단위: 명, %, 월

영역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영역 비율
		2	3	4	5	6	8	10	12	18	30			
감경	수	0	0	4	1	9	6	0	1	0	0	21	6.43	7.6
	비율	0.0	0.0	19.0	4.8	42.9	28.6	0.0	4.8	0.0	0.0	100.0		
기본	수	1	1	44	4	83	34	16	13	2	0	198	6.68	71.2
	비율	0.5	0.5	22.2	2.0	41.9	17.2	8.1	6.6	1.0	0.0	100.0		
가중	수	1	0	8	2	23	10	4	7	3	1	59	7.97	21.2
	비율	1.7	0.0	13.6	3.4	39.0	16.9	6.8	11.9	5.1	1.7	100.0		
전체	수	2	1	56	7	115	50	20	21	5	1	278	6.94	100.0
	비율	0.7	0.4	20.1	2.5	41.4	18.0	7.2	7.6	1.8	0.4	100.0		

- 양형기준 수정에 따라 추가된 상습협박의 형량분포도 가중영역 상한(1년6월)을 이탈하는 사건이 없음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폭처법(상습협박)	수	0	0	0	0	0	2	0	0	0	0	1	0	0	1	0	0	0	0	0	0	4	10.00		
	비율	0.0	0.0	0.0	0.0	0.0	50.0	0.0	0.0	0.0	0.0	2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100.0			

- 2015. 9. 24. 이후 선고

대표 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상습 협박	수	0	0	0	0	0	0	2	0	1	0	0	0	0	0	0	0	0	3	
	비율	0.0	0.0	0.0	0.0	0.0	0.0	66.7	0.0	33.3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가중영역 상한을 1년6월 → 2년으로 상향할 경우, 누범·특수협박 가중영역 상한이 2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유지가 적절함
- 일반협박의 경우,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독일에 비해 일반협박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무례에 비추어 보면, 형량을 낮출 필요도 있음

나. 소수의견(2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u>2년</u>

- 상습협박이 가중영역에 포함되어 상습협박의 법정형 상한이 4년6월인 점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향할 필요 있음
- 유사법정형(5년 이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가중영역 상한이 3년~4년인 점 고려

- 공무집행방해

순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6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 위증

순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3. 제3유형(운전자 협박치사)

가. 다수의견(8인) ⇨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 법정형 변경 없고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으므로, 수정의 필요성 없음

나. 소수의견(2인) ⇨ 가중영역 상한 수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8년

- 운전자 폭행치사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논거와 동일함
 - 상해치사 가중영역 상한을 8년으로 상향할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운전자 협박치사의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기준으로 유사 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가중영역 상한이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음

4. 형량범위(안)

가. 다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4월 2월 -1년	6월 4월 -1년6월	8월 6월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나. 소수의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년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8년
4	누범·특수협박	4월 2월 -1년	6월 4월 -1년6월	8월 6월 -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V.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논의 결과

1.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 다수의견(7인) ⇨ 현행 유지

- 과거 양형기준 설정 당시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논의를 거친 사항임
- 살인, 성범죄 등 19개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정의규정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경우와 차이가 없음
 -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 또는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합의만 되지 않는 사례들이 실무에 다수 존재함. 이런 사안의 경우 형량을 정할 때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인 배상은 전혀 받지 않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사안에서는 특별감경인자로 감경이 가능하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에도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감경을 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함
- 위 양형인자의 의미는 피해 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라는 양형인자는 여러 범죄군에서 다른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체 범죄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수정할 필요 있음
 - 양형인자로 유지할지 여부 및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범죄군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므로, 폭력범죄군에 한하여 논의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한다면, 상해가 발생한 후 상해와 인과관계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나. 소수의견(1인) ⇨ 대유형1(일반적인 상해), 대유형3(폭행범죄), 대유형4(협박범죄)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감

강인자로 반영, 그 외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최초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는 살인범죄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강도범죄 이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지 않았음
- 교통범죄는 별도의 심층검토를 거쳐 독자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도입하였으나, 폭력범죄의 경우 충실한 검토가 없이 양형인자가 설정되었으며, 사망 이외의 경우에 위 인자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양형인자의 통일성을 훼손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위 인자를 적용

다. 소수의견(1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이 금전적인 배상만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고 특별감경인자로 양형에 반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라. 소수의견(1인)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그 외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벌불원이라는 인자로 양형에 영향을 준다면, 범죄 중 개인에게 처분권이 있는 영역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인정해야 함. 따라서 개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영역의 범죄는 위 인자를 반영할 수 없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인자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는 이와 대등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인자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 정도로만 반영해야 함

2.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 다수의견(5인) ⇨ 현행 유지

- 실제 실무례에서 피해자의 병원비 상당액을 지출하는 경우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적용되고 있음
- 피고인의 노력이 있음에도 합의 결렬, 공탁이 불가능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노력을 반영할 필요성 있음
- 사회보험제도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피해회복을 통한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달성에 중요한 부분임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인자는 여러 범죄군에서 다른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전체 범죄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게 수정할 필요 있음
 - 양형인자로 유지할지 여부 및 그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범죄군 전반에 걸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므로, 폭력범죄군에 한하여 논의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나. 소수의견(3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위 양형인자는 재산상 피해액이나 이득액이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는 재산범죄에 적합한 특별양형인자임
- 상해나 사망 등 경제적 침해가 아닌 신체적·정신적 침해의 경우에 ‘피해 회복’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상당 부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양형기준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재산범죄와 달리 신체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다. 소수의견(2인) ⇨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의규정 수정

- 독립된 양형인자가 아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예로 포섭되어야 함
-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이 없어 그 의미가 모호하므로, ‘진

지한 노력', '합의에 준할 정도'라는 등의 제한이 필요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의규정 수정으로 해결이 가능함
 - 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공탁 이외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3.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

가. 다수의견(7인) ⇨ 현행 유지

- 살인범죄, 성범죄 등 12개 범죄군에서 '동종 실행전과'를 일반양형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폭력범죄 양형기준 설정 당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를 양형인자로 하여 동종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폭력범죄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²⁾ 폭력범죄의 대부분이 우발적인 범죄로 동종 전과가 1~2회 있다는 것만으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요한 양형인자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종 실행전과를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음³⁾
- 제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양형자료조사분석에 따르면, 동종 전과에 따라 평균형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동종 전과	있음	없음
특수상해	9.53월	9.41월
특수폭행	6.55월	6.25월
특수협박	6.89월	6.33월

나. 소수의견(2인) ⇨ '동종 실행전과'를 '동종 전과'로 수정

- 폭력사범 중 절반 가량이 벌금 이상 전과자이고, 그 중 5범 이상의

2) 상해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평균형량이 6.659월, 없는 경우 6.642월, 누범전과가 있는 경우 평균형량이 7.387월, 없는 경우 6.525월로 차이가 크지 않음

3) 2012. 1. 16.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전체회의자료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폭력재범자에 대한 엄정 대응이 중요함

- 단순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상습폭력을 야기하고, 나아가 강력 범죄로 진화함
- 현행 양형기준은 실행전과만을 일반가중인자로 취급하고 있어 폭력 전력 내지 범죄성향을 충실하게 양형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다. 소수의견(1인) ⇨ 삭제

- 동종 실행전과를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음

4.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가. 다수의견(8인) ⇨ 현행 유지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의 관계를 고려함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공동피고인 중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단순가담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라는 양형인자가 모두 중복적용될 가능성이 큼 ⇨ 지나친 엄벌 가능성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공동피고인 중 중한 형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여 선고형량에 반영하고 있음
- 단순히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는 단독으로 범행한 경우와 형량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는 폭력범죄의 특성상 단독이나 공동이라는 양형요소보다 범행 결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 단순 공동상해: 6.9월, 일반상해: 6.66월
 - 단순 공동폭행: 5.69월, 일반폭행: 5.29월

- 단순 공동협박: 6.88월, 일반협박: 6.85월
- 단독범행과 공동범행의 평균형량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어렵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할 경우 공동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적으로 가중영역을 권고하게 되어 양형실무와 맞지 않음

나. 소수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상습범죄와 마찬가지로 본형에 1/2이 가중된 별도의 법정형이 적용됨
- 양형기준 설정 당시 논의에도 공동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특히 상해의 경우 마지막 전문위원 회의까지 특별가중인자로 되어 있었으나 양형위 의결 안전에 일반가중인자로 기재된 채 논의 없이 그대로 의결됨
- 평균형량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일반상해: 6.1월, 공동상해: 7.4월
 - 일반폭행: 5.1월, 공동폭행: 6.1월
 - 일반협박: 6.4월, 공동협박: 6.8월

VI. 향후 일정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집행유예 기준] 검토
- 제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 검토
- 일시: 추후 논의하기로 함